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외동포 기부 특례 및 기부자 예우 근거 신설〉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51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7.
3. 회부연월일 : 2026. 4.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K-컬처’라 일컫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와 생활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같은 추세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로 하여금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재인식하며 고국이 자랑스러운 글로벌 중심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기부를 통해 고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국내로의 외화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가 기부를 하더라도 국내 발생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부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답례품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답례품으로 지역
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그 제공 한도를 상향시켜 고향에 대한 기
부를 장려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외국민 등 비거주자로
부터의 달러 유입을 통해 외화 수급 개선 및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외화 기부를 허용하여 고국 기여 경로를 확대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제공 한도를 상향하여 혜택 누락분을 보전하는 한편, 세액공제 및 답례품 외 추가적인 기부자 예우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 ② (생략) <u><신설></u>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화 등으로 기부를 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상당액의 범위에서 이를 갈음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적용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③ (생략) <u><신 설></u>	<u>국민</u> 2.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u>재외동포</u> ④ 제1항에 따른 외화 등의 범위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의2(기부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명예 주민증 수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명예 주민증 수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을 의미하고¹⁾, 법인이 아닌 개인이 주체가 되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²⁾ 1인당 연간 2,00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부할 수 있음³⁾.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제공받고⁴⁾⁵⁾,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⁶⁾.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 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구분	세액공제 내용
10만원 이하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100%)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초과분에 대해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 ※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상향 적용됨.
- ※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됨.
- ※ 자료: 행정안전부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수는 2025년 기준 외국국적동포 4,604,677명과 재외국민 2,402,026명으로 구성된 7,006,703명으로⁷⁾, 재외국민은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종합소득 등이 없어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답례품만 제공받게 됨.

6)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현황 총계(2025년 기준)」, 재외동포청 누리집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외화 기부를 허용하여 해외 거주자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제공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기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재외동포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는 기부금 모금 규모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세액공제 및 답례품 외에도 기부자에 대한 추가적인 예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자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외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려는 취지이나 실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비거주에 따른 국내 납세의무의 부재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례 적용 대상을 비거주자로서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명예주민증 수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현행 체계 하에서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명예주민증 수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⁸⁾, 현행 자치법규 체계에서도 군산시⁹⁾ 및 공주시¹⁰⁾ 등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8)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 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 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 나. (생략)

9)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7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군산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
2. 군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군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 대상, 기부 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0) 「지방자치법」

제22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2.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시 누리집 등에 기부자의 동의를 얻은 명단 공표
3.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
4.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5.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카드) 발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를 고려할 때, 기부자 예우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로서 조례를 통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로 격상하여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는 국내 발생 소득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답례품 한도를 상향하여 기부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내로의 외화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산출세액이 없음에도 세액공제 상당액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발생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 거주민 등을 포함하여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기부자 예우 사항의 경우에는 다수의 지방정부의 조례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또한, 재정경제부는 단순히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라는 사유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례 적용 대상을 비거주자로서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7